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¹⁾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현행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은 5년(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

연도	계 (100%)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
'20년	13,600억원	6,460	6,460	680
'21년	19,855억원	9,431	9,431	993
'22년	19,254억원	9,146	9,146	963
'23년	19,152억원	9,097	9,097	958
'24년	19,889억원	9,447	9,447	994

* 소요예산 年 약 2조원

* 재원분담: 국가(중액교부) 47.5% + 교육청 47.5% + 일반지자체 5%

* 자료 : 교육부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III.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2019년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증액 교부²⁾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

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³⁾	2024	20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4,527	605,305	535,430	603,370	812,975	653,636	688,732	722,794

자료: 교육부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⁴⁾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특례 규정 일몰 이후 기존의 국고부담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문위원 이 화 실)

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3)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65조 3,636억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는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통해 10조원이 넘는 교부금을 미배정한 후 불용처리한 것임.

4)< 고등학생 수 전망>

(단위: 만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학생 수	131	131	129	130	134	131

자료: 교육부